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AI253)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http://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5년 04월 0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04월 2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이 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7.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파생상품 포함)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은 동일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해외로의 자금송금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어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21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환매기준가 적용일 이후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중국 외환관리당국의 월간 총 송금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월간 한국으로의 송금한도를 초과하는 환매가 발생할 경우 익월로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익월에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중국본토의 장기 휴무 등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본토 주식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까지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AI253]

투자위험등급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중국 관련 해외주식(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A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A주 주식시장에의 투자 시 환매대금 수령 지연 위험 및 추적오차 발생위험, 상장폐지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요약정보

<b>투자목적 및 투자전략</b>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CSI A100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국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CSI A1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가능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가능 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고려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b>분류</b>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모자형, 상장지수투자신탁(ETF)										
<b>투자비용</b>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	-	0.650	0.150	1.860	0.745	76	156	239	416	93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b>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b>	<b>종류</b>	<b>최초설정일</b>	<b>최근 1년</b> 2022/05/29 ~ 2023/05/28	<b>최근 2년</b> 2021/05/29~ 2023/05/28	<b>최근 3년</b> 2020/05/29 ~ 2023/05/28	<b>최근 5년</b> 2018/05/29 ~ 2023/05/28	<b>설정일이후</b>				
	-	2013-05-29	-3.97	-13.68	1.46	2.48	5.53				
	<b>비교지수</b>	2013-05-29	-4.96	-14.66	0.36	1.26	4.06				
	<b>수익률 변동성</b>	2013-05-29	18.18	17.54	19.13	19.41	21.33				
(주1) 비교지수: CSI A100 지수 * 100% (KRW 환산 기준)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운용전문인력</b>	<b>성명</b>	<b>생년</b>	<b>직위</b>	<b>운용현황</b>		<b>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b>				<b>운용경력년수</b>	
				<b>펀드수(개)</b>	<b>규모(억)</b>	<b>운용역</b>		<b>운용사</b>			
			<b>최근1년</b>			<b>최근2년</b>	<b>최근1년</b>	<b>최근2년</b>			
	노아름	1982년	책임	76	102,229	-	-	0.88	14.28	17년 8개월	
	문인규	1988년	책임	11	1,166	10.05	-2.29			9년 7개월	
민경호	1993년	부책임	23	24,492	11.10	48.03	5년 7개월				
항상욱	1998년	부책임	-	-	-	-	8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주3) 동종집합투자지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지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지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 집합투자지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중국본토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A주 주식시장에의 투자시 환매대금 수령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A주 주식시장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경우 중국 외환관리규정 상 QFII(외국인 투자자격자격증[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를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은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일반적으로 15여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투자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금액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본토에 외국 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은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투자자의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달러/위안화 관련 파생상품 또는 달러/원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국내와 해외시장의 물리적 시차, 투자대상 주식 및 ETF의 상장폐지, 투자대상 ETF의 거래가격과 NAV(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및 환율변동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매입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환매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지구 총좌수 - 1차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bam.co.kr">www.kbam.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클래스·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bam.co.kr">www.kbam.co.kr</a> )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이 없음	
효력발생일	2025년 04월 24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bam.co.kr">www.kbam.co.kr</a> )의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46~p.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해당사항 없음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http://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AI25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2) 상장지수투자신탁(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총 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http://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http://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2) 상장일: 2013년 06월 04일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 1) 규모요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고, 발행 집합투자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 2) 유동성 요건: 지정참가회사<sup>1</sup>(AP[Authorized Participant])가 1사 이상일 것
- 3) 자산의 구성요건: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이상 편입하고, 지수 구성 종목 수의 50%이상을 투자신탁재산 구성종목에 편입할 것

※ 지정참가회사<sup>1</sup>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

- 가. 추적오차율: 3월 이상 추적오차율(이 투자신탁의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9초지수의변 동율의 차이)이 10% 이상 유지되는 경우
- 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가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경우
- 다.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7조의2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일괄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 일괄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주)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AI25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13.05.29	최초설정
2013.06.04	한국거래소 상장
2015.03.23	설정단위(CU) 변경[300,000좌 → 100,000좌]
2015.08.31	투자신탁명칭을 'KB KStar 중국본토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에서 'KB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으로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문경석 → 임승관)
2015.10.08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임승관/김대영 → 모세영/김대영, 부책임: 모세영 → 왕희범)
2016.03.30	투자신탁명칭을 'KB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에서 'KB KB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으로 변경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왕희범 → 김홍주)
2016.07.02	위험등급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변경
2016.07.21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한국예탁결제원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17.01.20	매매기준시간 변경(오후 4시 → 오후 4시 30분)
2017.07.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모세영/김대영 → 차동호/김대영)
2018.01.2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홍주 → 김정훈). 위험등급 변경(1등급 → 2등급)
2019.09.18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9.11.29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운용전략(일반주식형 → 인덱스주식형) 변경,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김정훈 → 김정훈/김동희)
2020.02.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정훈/김동희 → 지우진/김동희)
2020.10.05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21.02.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지우진/김동희 → 김병석/김동희)
2021.03.25	모투자신탁[KB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삭제
2021.04.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병석/김동희 → 김동희)
2022.02.2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희 → 김동희/김민수)
2022.06.10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 산출기준 변경 적용일 : 2022.06.13)
2024.04.30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김대영/차동호 → 노아름/문인규, 부책임: 김민수/김동희 → 민경호/한유빈)
2024.07.17	투자신탁명칭 변경[KB KB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2024.11.01	기초지수 명칭변경(CSI100 지수 → CSI A100 지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민경호/한유빈 → 민경호/구하나)
2025.04.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민경호/구하나 → 민경호/황상욱)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5년 04월 07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노아름	1982년	책임	76	102,229	-	-	0.88	14.28	17년 8개월
문인규	1988년	책임	11	1,166	10.05	-2.29			9년 7개월
민경호	1993년	부책임	23	24,492	11.10	48.03			5년 7개월
황상욱	1998년	부책임	-	-	-	-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노아름	삼성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 14년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팀 2년 8개월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 1년	민경호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 5년 7개월
문인규	HSBC펀드서비스 펀드회계팀 1년 11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9년 7개월	황상욱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8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사업본부 및 글로벌멀티에셋본부가 공동운영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담당 팀원에 한하여 운용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25년 04월 07일 기준)

성명	운용기간	비고
김대영	2013.05.29~2024.04.29	글로벌운용본부
문인규	2024.04.30~현재	

차 동 호	2017.07.04~2024.04.29	ETF사업본부
노 아 름	2024.04.30~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상장지수투자신탁(ETF)

### > Primary Market (ETF 발행시장)

ETF는 특정지수를 대표하는 인덱스와 동일한 수익을 얻고 인덱스의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 > Secondary Market (ETF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에서는 발행시장을 통해 설정된 ETF가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을 통해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또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 대상 및 전략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관련 해외주식(중국본토 A주식에의 투자) 60%이상, 채권 및 어음 각 40%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시장(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A주식을 법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중국본토 시장에 상장된 A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b>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	<p>1) CSI A1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본토 시장(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A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CSI A100 지수와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면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2)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인 **CSI A100(China Securities Index A100)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또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b>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b>	<b>90%이상</b>	신탁계약서 제2조 제19항에 의한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b>유동성자산 등</b>	<b>10%이하</b>	- 다만, 신탁계약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자산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모투자신탁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해외상장주식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투자함

#### ▣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b>중국관련 해외주식 (단, 중국본토 A주식에의 투자는 60% 이상)</b>	<b>60%이상</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중 중국 및 중국관련 국가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등	40%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⑥	증권의 대여	증권의 50%이하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⑨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신탁계약서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p>※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li> <li>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로 운용</li> </ol>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3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⑤~⑧의 투자한도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함</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하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p>※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 운용,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증권의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가. 증권의 대여: 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률 증진, 매매 편의성 증대(ETF에 해당되는 경우로, ETF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하므로 시장조성자들은 호가 수량 확대 및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음) 등</p> <p>나. 증권의 차입: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p>

**나. 투자제한**

**▣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④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④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b>파생상품 투자</b></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b>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b></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b>후순위채권 투자</b></p>	<p>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b>투자한도 적용의 유예</b>	<p>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CSI A100(China Securities Index A100)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집합투자자산 대부분을 중국본토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CSI A100 지수의 수익률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 운용의 기본방침: CSI A1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능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능 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고려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하여 투자합니다.
- 2)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기본적으로 CSI A100 지수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CSI A100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등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3) 포트폴리오 조정: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변화 또는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주식 및 추가지수선물의 투자비중 조정, 투자종목 교체 혹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 (가) 관련투자대상의 저·고평가 현상 발생시
  - (나)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으로 주식 현물 투자 비율의 제한이 완화될 경우
  - (다)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 (라)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의 기업 이벤트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 시
  - (마)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 혹은 거래중지 발생 시
  - (바)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추적오차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충분한 사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ETF의 증가와 NAV의 괴리/ ETF별 운용방식에 따라 NAV와 추종 지수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중국본토 A주 관련 지수와 선물가격의 차이(현선물 베이스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51조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한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 등에 매일 공고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CSI A100 지수 \* 100% (KRW 환산 기준)**

- CSI A100 지수의 개요  
CSI Allshare 지수(중국의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주 전체 종목이 포함된 지수) 종목 중에 업종 대표성, 시가총액, 유동성, CSI ESG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0 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평균 주가지수.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 의해 2006년 05월 29일에 만들어졌으며, 200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지수가 1,000pt부터 시작되어 계산됨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CSI A100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상기 지수를 기초지수로 선정하였음
- 지수산정 방법 등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5년 12월 30일, 1,000pt
  - 산출방식: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 정기변경: 연 2회(매년 6월, 12월 두번째 금요일 다음 영업일)
  - 수시변경: 기업공개, 합병, 파산, 분할,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CSI A100 지수 구성종목으로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초지수 조회방법
  - KB자산운용 KB RISE ETF 홈페이지: [www.riseetf.co.kr](http://www.riseetf.co.kr)
  - CSI 사이트: [http://www.csindex.com.cn/sseportal\\_en/csiportal/zs/zshq.do](http://www.csindex.com.cn/sseportal_en/csiportal/zs/zshq.do)에서 조회 가능
  - 구글파이낸스: <http://www.google.com/finance?q=SHA%3A000903&ei=DFE0UeibI9GVkgWzQg#>

※ CSI A100 지수 추이(2009년 01월 이후)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http://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CSI A100 지수는 중증지수유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sindex.com.cn](http://www.csindex.com.cn)) 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구성종목,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SI A100 인덱스는 중증지수유한공사(CSI)에 의해 산출됩니다. CSI는 지수와 연관된 자료의 정확도 혹은 완성도에 대하여, 고객이나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보장이나 표현 혹은 암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으로만 제공되며, CSI는 제공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오류나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 투자전략: 운용의 기본방침: CSI A1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능 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능 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고려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하여 투자합니다.
  - 1) 운용의 기본방침: CSI A1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능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능 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고려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하여 투자합니다.
  - 2)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기본적으로 CSI A100 지수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CSI A100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등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3) 포트폴리오 조정: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변화 또는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의 투자비중 조정, 투자종목 교체 혹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 (가) 관련투자대상의 저·고평가 현상 발생시
    - (나)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으로 주식 현물 투자 비율의 제한이 완화될 경우
    - (다) 비교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 (라) 비교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의 기업 이벤트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 시

- (마)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 혹은 거래중지 발생 시
  - (바)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4)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 주식시장 개요>**

- 중국 본토시장에는 홍콩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 대부분의 국내 중국 펀드는 홍콩시장과 일부 중국본토 B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본토 A주식은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인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상해	A 증시	중국 국내 투자자들 및 일부 승인된 외국인 대형 기관투자자들(QFII)이 거래하는 중국 인민폐(위안화) 기준의 증권시장
	B 증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가능한 증권시장, 미국 달러화(USD)로 거래
심천	A 증시	중국 국내 투자자들 및 일부 승인된 외국인 대형 기관투자자들(QFII)이 거래하는 중국 인민폐(위안화) 기준의 증권시장
	B 증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가능한 증권시장, 홍콩달러(HKD)로 거래

**<중국 A주식>**

※ 중국 증권거래소의 A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상해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각각 A주식 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국 A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국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가운데 중국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나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기관인 CSRC(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에 제정한 제도로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A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얻고 SAFE(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 중국 A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Quota)를 부여 받게 됩니다.

**<QFII제도에 따른 중국금융당국의 A주식 투자 관련 외환거래 및 투자제한 규정>**

※ 중국으로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자금이 최초로 미화 2천만 달러를 초과한 시점부터 중국 A주 시장에 투자 가능합니다. SAFE(중국외환관리국)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투자자금에 대해 다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중국외환당국 SAFE(중국외환관리국)에 따르면, QFII 투자자금에 대한 다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외환당국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투자자금에 대하여 중국에 송금된 자금이 투자한도를 모두 채운 시점(투자한도 승인일로부터 6개월내 투자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투자한도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투자자금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금 회수제한기간 이후에도 투자자금의 중국에서의 입출금 흐름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도 승인일(2012.12.25)로부터 최대 9개월 동안은 중국 본토 밖으로 송금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환매 청구를 할 경우 자금인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해외로의 송금이 주 1회로 제한되며, 월간 송금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므로 월간 송금한도를 초과하는 환매가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순연될 수 있으며 익월에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이후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환매대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 중국 금융당국에 의한 외환관리규정의 변경이나 외화환전 지연 또는 송금지연, 국제 금융 시장의 환경변화,

일시에 대량환매요청 등의 사유로 환매금액의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SI A100 지수 \* 100% (KRW 환산 기준)**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주 시장(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SI A100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음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http://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 CSI A100 지수는 중증지수유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sindex.com.cn](http://www.csindex.com.cn))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구성종목,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해외투자자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운용역은 환율 관련 사항, 해지대금의 규모, 투자 대상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경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국 통화 또는 다른 통화를 활용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환율변동 및 환매규모 등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수익자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투자자 공시사항**

**1) 법규 적합성 공시**

본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주요한 투자수단인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개설된 중국예탁결제원(CSDCC)의 증권계좌는 중국의 관련 감독 기관과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여 중국 현지수탁은행에 의하여 관리되고, 집합투자업자와 본 상장지수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내 외화유동성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현금계좌는 중국의 감독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받은 중국 현지 수탁은행에 개설되어 중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중국현지 수탁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련 감독규정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투자신탁의 중국 현지 수탁은행은 중국의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증권계좌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현금계좌 내에 보관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계좌와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며 본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 및 증권중개기관은 매매를 실행함에 있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산 및 해당집합투자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매매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은 중국현지 수탁은행으로 하여금, 수탁은행의 고유자산과 QFII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받은 자산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투자업자의 다른 투자신탁의 자산과도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본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 및 증권 중개기관은 매매를 실행함에 있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산 및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매매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수탁은행은 집합투자업자를 위하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증권계좌 내의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체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현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현지 수탁은행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혹은 증권중개기관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 처하더라도 중국현지의 증권계좌 및 현금계좌 내 보유한 자산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혹은 증권 중개기관의 청산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도 본 투자신탁의 재산은 해당 현지 수탁은행의 청산절차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다만 현금계좌 내 보유한 자산의 경우는 증권계좌 내 보유자산과는 달리 현지 수탁은행의 청산 절차 이행 시 청산대상 자산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본 투자신탁은 해당하는 현금계좌의 예금 분에 대하여 무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 본 투자신탁의 중국 현지 수탁은행의 개요

- 은행명(영문): Citibank (China) Co., Ltd.
- 대표이사: Au, Andrew
- 본점소재지: 33 Hua Yuan Shi Qiao Road, Shanghai, 200120 P.R. China
- 전화번호: 86-21-2896-6000
- 웹사이트: <http://www.citibank.com.cn>
- 전자메일: nan.hai.huang@citi.com

## 2) QFII의 자금유출입 제한과 그에 따른 설정환매와 관련된 운용에 대한 사항 공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이하“A주”)투자는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투자됩니다. 중국 정부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A주 투자자금의 유출입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설정/환매 자금의 유출입 역시,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자투자신탁은 최초설정 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QFII 한도 소진일로부터 3개월 혹은 QFII 한도 승인일(2012년 12월 26일)로부터 6개월되는 시점부터 3개월]까지 투자자금의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자금유출입 제한은 기초지수 대비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설정/환매에 따라 본 투자신탁에서 A주의 투자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설정과 환매가 발생했을 때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제한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을 방지하고 자, 대체자산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경우) 추가설정에 따라 자금이 유입된 경우, 중국본토 A주를 추적하는 파생상품과 국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에서의 자금 입출금이 가능한 시기에 QFII 투자한도가 여유가 있을 경우, 이 대체자산과 A주의 교체 매매를 실행하고, A주를 주로 보유하는 것을 기본 운용원칙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만일 QFII 투자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QFII 한도의 추가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QFII 한도의 추가확보가 되는 시점까지는 대체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초지수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환매의 경우) 일부환매의 경우, T+2 일 공시기준가로 환매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기초지수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A 주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대체자산을 매도하여, 환매대금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후 중국본토에서의 자금 입출금이 가능한 시기에 준비된 환매대금을 회수하여 일부 환매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유출입의 제한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환매의 절차는 신탁계약서 제 28 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환매 절차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QFII의 위험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 A 주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A 주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발생 1개월 내에 자산을 환매하고 개설한 계좌를 폐쇄해야 하고, 투자한도도 이와 동시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중국 A주 시장 투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자격 취소, 계좌폐쇄, QFII 한도 무효 또는 취소(축소)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투자한도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납입해야 하고, 최초 투자원금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자격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화송금금지 기간 이후 중국 내 잔존 투자원금이 미화 2천만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또한 QFII 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중국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의 감소나 자격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및 처벌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한도를 양도하는 등 외화 불법사용행위
- 수탁은행 또는 중국정부에 허위정보나 자료 제공
- 규정에 반하여 투자금의 외화결제 또는 외화를 매도/매입한 경우
- 중국정부가 요구한 자금외화결제 및 역내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중국정부가 정한 규정에 반한 기타 행위

③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이 판단하는 기타사항(구체적인 해당규정은 없으며, 개별사안별로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름)에 의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자격 및 투자한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과 유가증권시장내의 상장 및 거래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규제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준법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자격이 취소될 경우, 지체 없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시할 것이며, 투자자가 이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FII 자격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인 CSI A100(China Securities Index A100)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또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중국관련 해외주식 등에 60%이상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중국 관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중국 본토 등)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중국본토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 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p><b>신흥국가 투자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투자 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이 있는 A시장,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B시장, 홍콩의 H시장 등 복수의 주식시장이 상존하고 있어 가격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하며,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 있으며, 정부주도 하에 개방경제로 진행 중에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료주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p>
<p><b>자금송환 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p><b>환매지연위험</b></p>	<p>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b>A주 주식시장에의 투자시 환매대금 수령 지연 위험</b></p>	<p>이 투자신탁에서 A주 주식시장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경우 중국 외환관리규정 상 QFII(외국인투자자격자격증[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은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21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p><b>QFII 지위 축소 또는 제한에 따른 위험</b></p>	<p>집합투자업자는 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QFII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본토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b>중국 세제상 과세 위험</b></p>	<p>현재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A주에 대한 매매이익 또는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과세당국은 이 투자신탁의 주식관련 매매 및 평가 이익에 대하여 소급 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이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예상금액을 펀드에 유보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소급과세를 적용할 경우 적용 이후 가입하는 투자자 또는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에게 소급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급과세 적용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펀드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자들의 가입시점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관련 정책은 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발표나 유권해석,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공통방안 및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b>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b></p>	<p>투자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금액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본토에 외국 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은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투자자의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달러/위안화 관련 파생상품 또는 달러/원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p>

<p><b>추적오차 발생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국내와 해외시장의 물리적 시차, 투자대상 주식 및 ETF의 상장폐지, 투자대상 ETF의 거래가격과 NAV(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및 환율변동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p>
<p><b>괴리를 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외환관리국으로부터 투자한도를 승인 받아 A주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중국 A주 투자한도가 조기에 소진되고 추가한도를 승인 받을 경우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추가설정에 대하여 대체자산인 해외ETF 또는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추가발행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이 적정 순자산가치보다 높아지는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유통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적정 순자산가치보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자가 투자신탁의 환매를 통하여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관리하게 되지만, 중국 본토의 투자제한에 의하여 환매자금 지연 또는 환매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발주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b>상장폐지위험</b></p>	<p>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해야 합니다.</p>
<p><b>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b></p>	<p>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경쟁매매를 통해 ETF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좌당 거래가격이 1좌당 NAV에 비해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1좌당 NAV와 일치하지 않는 ETF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b>최소투자규모 제한으로 인한 위험</b></p>	<p>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 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자금 규모가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모집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중국 A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종 모집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b>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b></p>	<p>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b>외국 거래소의 휴장일 차이에 따른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왜곡 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A주 관련선물, A주 관련 ETF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해외거래소에 거래되는 자산은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동일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휴일 혹은 영업일 차이로 인해 해외 거래소가 개장하지 않음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연 반영되거나, 기초자산의 변동을 실제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기초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투자신탁의 기준가</p>

	격에 기초지수와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를 계산함에 있어, 해외 거래소의 휴장일에 따라 그 산출되는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는 실제 기초자산의 가격과는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인덱스 바스켓의 구성이 어려워져 지수의 추적이 곤란하거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산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가 **18.15%**로 **2등급에 해당**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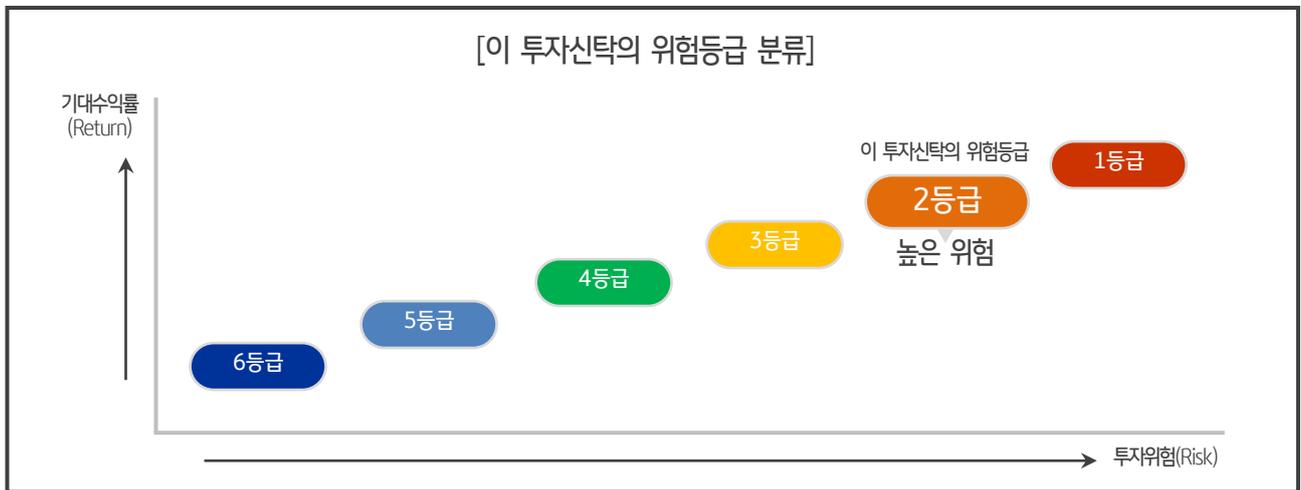
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본토 관련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주)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표준편차: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한 값으로써 수익률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며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 1) 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은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2)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 (가)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10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나) 설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주)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2) 설정단위(Creation Unit)

- 1)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10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100,000좌 또는 그 정배수(200,000좌, 30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

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할 것입니다.

#### ☞ 설정단위의 변경

- “CSI A1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준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산금액(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그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 정산금액산출

- 설정시: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 등의 설정청구일 증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
- 환매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기준 평가금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액

#### 2)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

- 3)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증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함

####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 **(4) 집합투자기구 설정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 등을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2)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납부금 등(유가증권 및 현금을 말합니다)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 등의 설정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5) 1)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자금의 투자대상국가의 법과 규정에 의해 자금의 입금 및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1) 내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6) 5)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청구를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 (5) 집합투자기구 설정 절차

###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설정청구일(T)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주식, 현금 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일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설정일(T+2)

-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집합투자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입고시간을 T+2일 한국거래소 영업개시 시점에 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들께서는 집합투자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설정 자산 및 현금 납입 정산금액 존재 시, 정산 및 집합투자증 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 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 등 이체(한국예탁 결제원의 계좌이체 에 의한 이체)

집합투자업자	포트폴리오납입자산통보(한국거래소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Balancing Amount 확정(기준가 산출 이후)	집합투자증권 발행(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 나. 환매

### (1) 환매방법

- 1) 시장을 통한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법인의 환매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10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1)~3)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자가 1)~4)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의 환매청구일 증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고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전월 29일부터 당월 7일까지 환매청구시: 당월 18일에 환매대금 지급
2. 당월 8일부터 당월 14일까지 환매청구시: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3. 당월 15일부터 당월 21일까지 환매청구시: 익월 4일에 환매대금 지급
4. 당월 22일부터 당월 28일까지 환매청구시: 익월 11일에 환매대금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공시한다.
  -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외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 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익자의 환매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되,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한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익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다만, 익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도 월간 송금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금한도액을 충족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순연하여 환매대금 지급
- 6) 5)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 7) 1)~4)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5)에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8) 7)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9) 1)~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나)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 이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자금의 투자대상국가의 법과 규정에 의해 자금의 출금 및 최소투자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 (3) 집합투자증권 환매 절차

####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환매청구일(T)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집합투자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 환매청구일 익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일 익일 종가기준으로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 환매청구일 당일 발표한 납입자산내역(PDF)의 평가액의 차액을 수정 정산금액(수정BA)으로 산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제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보합니다.

#### 환매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환매일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

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전월 29일부터 당월 7일까지 환매청구시: 당월 18일에 환매대금 지급
- \* 당월 8일부터 당월 14일까지 환매청구시: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 \* 당월 15일부터 당월 21일까지 환매청구시: 익월 4일에 환매대금 지급
- \* 당월 22일부터 당월 28일까지 환매청구시: 익월 11일에 환매대금 지급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T-1	T (전월 29일부터 당월 7일까지) (당월 8일부터 당월 14일까지) (당월 15일부터 당월 21까지) (당월 22일부터 당월 28일까지)	T+2	환매일 (당월 18일 당월 25일 익월 4일 익월 11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집합투자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주식 및 현금)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집합투자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통보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 내역 확인

☞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유동성 위험: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X	O	X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게시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최초 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초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bam.co.kr">www.kbam.co.kr</a>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채무증권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b>외국 집합투자증권</b>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 수 료 구 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비고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00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판매회사보수	0.150	
신탁업자보수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	
투자신탁보수 합계	0.650	-
기타비용	0.000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0.650	-
합성 총 보수·비용	0.745	-
동종유형 총 보수	1.860	-
증권거래비용	0.033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 보수·비용은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산출되었습니다.

$$\text{합성 총 보수·비용비율(모펀드 포함)} = \frac{(\text{자펀드 기타비용} + \text{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른 기타비용}) + \text{자펀드 총보수}}{\text{순자산 연평균잔액}} \times 100$$

-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지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 예시: 증권·선물·옵션 등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증권거래비용	20,793

- ※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금융비용	-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정보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6	156	239	416	930

-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 종료일의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16년 07월 2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으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간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2023.01.01~2023.12.31)	신한	적정
제10기(2022.01.01~2022.12.31)	신한	적정
제9기(2021.01.01~2021.12.31)	신한	적정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11기	제 10기	제 9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운용자산	52,099,688,411	60,622,257,613	76,067,342,659
증권	52,030,584,190	60,594,291,180	76,029,518,65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9,104,221	27,966,433	37,824,00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1,109,110	11,583,792	10,240,209
자산총계	52,110,797,521	60,633,841,405	76,077,582,86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47,067,100	127,857,227	142,436,611
부채총계	147,067,100	127,857,227	142,436,611
원본	36,000,000,000	36,000,000,000	35,000,000,000
수익조정금	362,174,770	-262,366,403	2,530,173,730
이익잉여금	15,601,555,651	24,768,350,581	38,404,972,527
자본총계	51,963,730,421	60,505,984,178	75,935,146,257

(단위: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1기	제 10기	제 9기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운용수익	-8,435,795,795	-16,833,267,594	1,182,735,867
이자수익	1,734,386	513,769	118,187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8,437,530,181	-16,833,781,363	1,182,617,680
기타수익	106	0	1,110
운용비용	383,884,337	414,980,421	442,827,865
관련회사 보수	383,884,337	414,980,421	442,827,86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84,748,397	88,123,268	90,959,290
당기순이익	-8,904,428,423	-17,336,371,283	648,949,822
매매회전율	15.56	32.06	80.79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당기 매매회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 되었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 평균금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3,138,800	11,024	2,694,071	9,767	62,767	15.56	12.30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1기	제10기	제9기
증권대여 수익			
증권차입 비용			

주3) 기타비용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산별 거래금액 및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비율(B/A)		금액(B)	비율(B/A)
주식	20,787	21	0.10	45,887	46	0.1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합계	20,787	21	0.10	45,887	46	0.10

※ 주1)~주3)에 기재된 수치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0	605	0	37	0	33	0	520
2022.01.01 ~ 2022.12.31	0	759	0	19	0	0	0	605
2021.01.01 ~ 2021.12.31	0	540	0	621	0	409	0	759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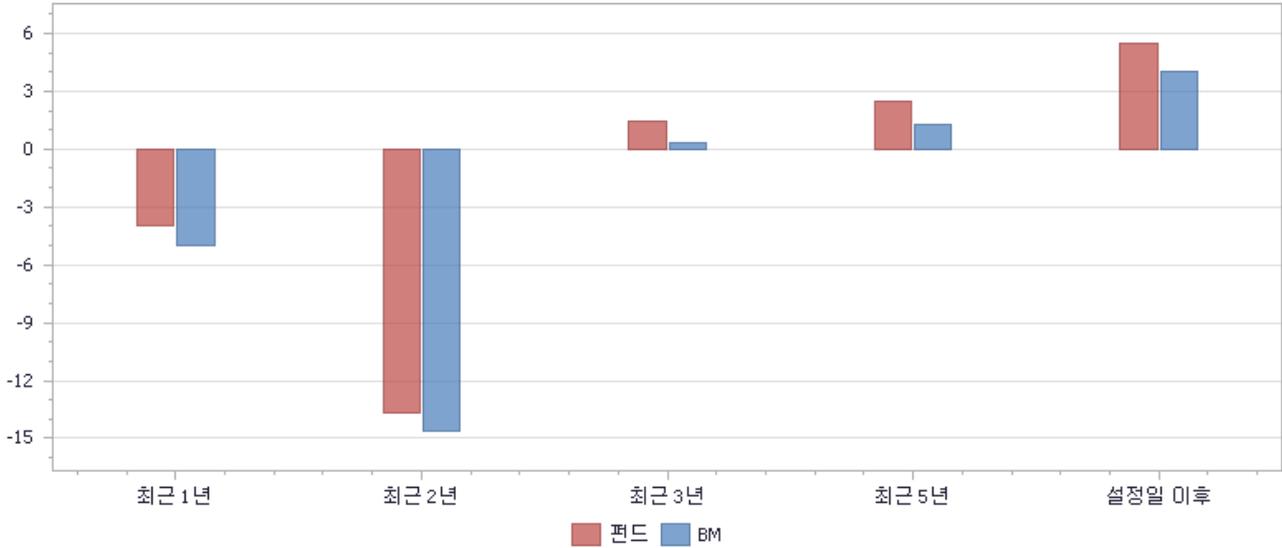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23년 05월 29일, 단위: %)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3.97	-13.68	1.46	2.48	5.53
비교지수	-4.96	-14.66	0.36	1.26	4.06
수익률 변동성	18.18	17.54	19.13	19.41	21.33

※ 비교지수: CSI A100 지수 100%(KRW 환산기준)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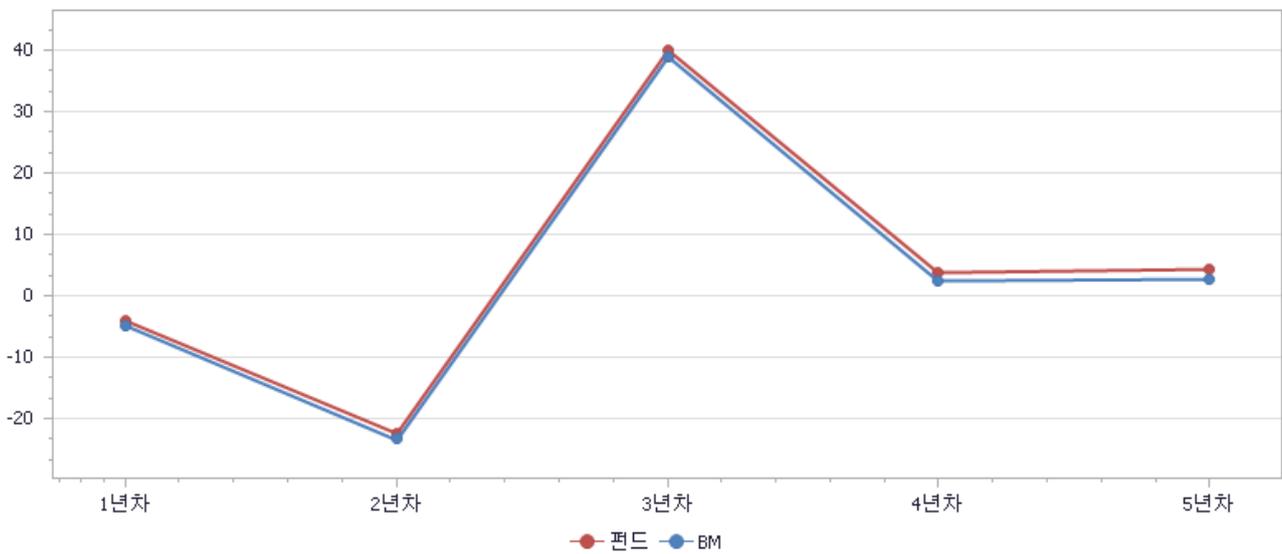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23년 05월 29일, 단위: %)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3.97	-22.41	40.17	3.74	4.33
비교지수	-4.96	-23.38	38.83	2.49	2.75

※ 비교지수: CSI A100 지수 100%(KRW 환산기준)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24년 01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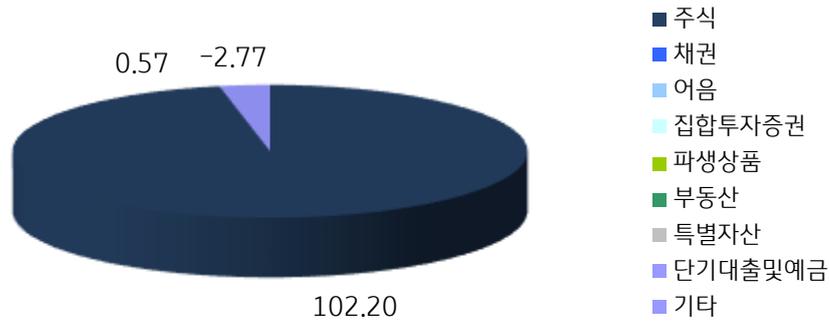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14	-1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7)	(106.17)	(100.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100.00)
CNY	533	0	0	0	0	0	0	0	0	2	0	535
	(99.6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0)	(0.00)	(100.00)
합계	533	0	0	0	0	0	0	0	0	3	-14	521
	(102.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7)	-(2.77)	(100.00)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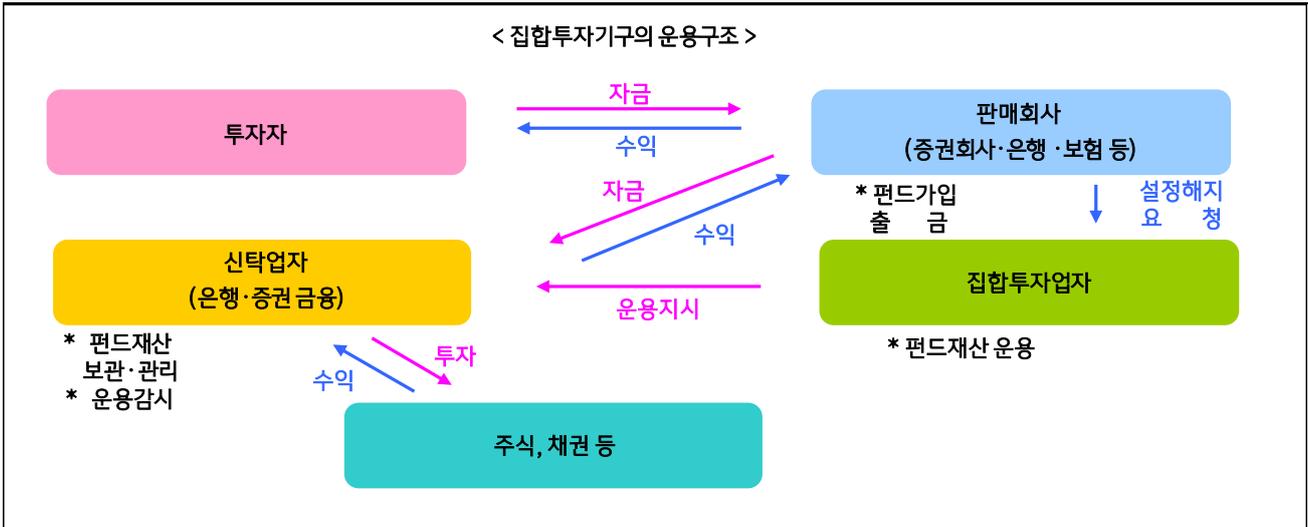
※ 어음에는 CD를 포함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주)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해당사항 없음

####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37기	제36기
기 간	2024.12.31	2023.12.31
현금 및 예치금	39,012,883,353	38,933,936,1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90,757,945,462	260,215,813,6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71,510,606	545,347,032
관계기업투자주식	7,145,699,529	4,149,585,989
파생상품자산	5,099,715	332,043,870
대출채권	4,210,000,000	3,920,500,000
유형자산	15,251,040,466	18,406,120,618
기타금융자산	39,001,686,539	37,515,303,438
이연법인세자산	7,913,422,412	4,582,662,827
기타자산	11,172,971,073	9,318,136,104
<b>자산총계</b>	<b>414,942,259,155</b>	<b>377,919,449,718</b>
예수부채	13,709,000,000	11,573,142,857
파생상품부채	996,039,181	15,440,502
기타금융부채	58,819,535,406	69,580,135,760
총당부채	1,497,513,520	1,239,500,102
순확정급여부채	165,210,964	248,473,081
기타부채	45,036,929,511	26,989,165,775
<b>부채총계</b>	<b>120,224,228,582</b>	<b>109,645,858,077</b>
지배기업주주지분	294,383,401,930	268,273,591,641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자본잉여금	-1,417,274,031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21,913,792	-350,647,173
이익잉여금	256,541,012,169	230,040,922,776

비지배지분	334,628,643	-
<b>자본총계</b>	<b>294,718,030,573</b>	<b>268,273,591,641</b>
<b>부채와 자본총계</b>	<b>414,942,259,155</b>	<b>377,919,449,718</b>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7기	제36기
기 간	2024.01.01~2024.12.31	2023.01.01~2023.12.31
영업수익	246,183,703,573	204,201,520,573
영업비용	156,556,186,136	119,997,408,077
영업이익	89,627,517,437	84,204,112,496
영업외수익	739,824,874	428,606,617
영업외비용	2,219,072,565	2,483,620,5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8,148,269,746	82,149,098,598
법인세비용	21,776,039,885	20,624,213,266
당기순이익	66,372,229,861	61,524,885,332
기타포괄이익	1,284,434,223	231,392,683
총포괄이익	67,656,664,084	61,756,278,015

라. 운용자산 규모

(2025년 04월 07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90,836	16,997	159,726	42,338	56,516	67,947	167,536	25,651	199,320	826,86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전화번호	☎ 1588-70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citibank.co.kr">www.citibank.co.kr</a>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투자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4층
전화번호	☎ 02-769-7855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fp.com">www.korfp.com</a>

#####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a href="http://www.koreaap.com">www.koreaap.com</a>	<a href="http://www.npricing.co.kr">www.npricing.co.kr</a>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및 모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3) 연기수익자총회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sup>1</sup>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sup>1</sup>: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 (5)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2) 수사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p style="text-align: center;"><b>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b></p>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li> <li>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li> <li>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li> </ol>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p>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부금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최소 수량을 말합니다.
설정단위의 평가금액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